

수원지방법원 2021. 5. 14 선고 2020가단552522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등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배

변 론 종 결 2021. 4. 23.

판 결 선 고 2021. 5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7. 31.부터 2020. 10. 31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① 원고가 2017. 5. 10. 피고들과 사이에, 화성시 G타운하우스 H호를 매매대금 325,000,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들이 지정한 피고 B(I)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(계좌번호 : J)로 계약금 32,500,000원을 송금한 사실, ② 원고와 피고들은 2018. 7. 3.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, 피고들은 2019. 8. 1. 원고에게 계약금 32,500,000원을 반환하되, 2019. 7. 31.부터 연 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계약금 32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7. 3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. 10. 31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서영

1)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의무를 ‘각자’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, 피고들의 위 금원지급의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‘공동하여’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. 또한 청구취지 기재 ‘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’은 ‘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’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선행하여 판단하였다.

